

[별지서식 제1호 앞면] 본 광고사전검토필증은 온라인을 통해 교부되었습니다.

접수번호	광고사전자율심의신청서				처리기간
01-01-P-2100514					7일
신청자명	주식회사 위디드	대표자	장혜정	사업자등록번호	217-81-50392
신청자주소	경기 안양시 동안구 흥안대로427번길 57-2 9층 908호			연락처	담당자명: 이선용
					연락처: 010-7292-3028
					팩스: 070-4015-5569
광고 상품명	순할수 뿌리는 살균소독제	광고주명	위디드	광고매체	VLM : 이미지매체 (A안)
대행사명	위디드	제작자명	위디드	심의구분	초심 O 수정심
검토의견					
수정 요망 사항 1. 인플루엔자 바이러스균 - '(H1N1)' 삽입 요망. 끝.					
변경내용					

광고물의 사전 검토를 위와 같이 신청 합니다.

한국광고자율심의기구 귀중

2021년 2월 22일
신청인 주식회사 위디드

심의의결	심의결정	광고적합	2021년 2월 25일 한국광고자율심의기구 
	심의번호	21-P1-02-4	
	기타	검토의견 이행이 필요한 조건부 적합 광고물임.	

※ 주의사항은 뒷장에 첨부되니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
[별지서식 제1호 뒷면] 본 광고사전검토필증은 온라인을 통해 교부되었습니다.

광고 이미지			
기타		면번호	2

심의의결	심의결정	광고적합	2021년 2월 25일 한국광고자율심의기구 
	심의번호	21-P1-02-4	
	기타	검토의견 이행이 필요한 조건부 적합 광고물임.	

※ 필증 사용시 주의사항

- ① 심의 받은 내용과 다르게 임의 변경하여 사용하실 수 없습니다.
- ② 원하실 경우, 한국광고자율심의기구로부터 사전에 검토 받은 사실을 심의필 광고물에 표시하실 수 있습니다.
이 경우 광고물 우측상단에 <한국광고자율심의기구 사전검토필 심의번호> 문구로 한정하며, 기구 로고 필요 시 사무처에 별도 문의바랍니다.
단, 패키지 및 기타 포장용기에는 기구 로고 및 심의번호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.
- ③ '2항의 표시 이외에 광고표현 내 심의기구 언급 및 필증 이미지와 기구 로고 사용은 불허합니다.
- ④ 필증의 유효기간은 2년입니다.
- ⑤ 필증을 위·변조하거나 상기 사항 위반 시 모든 법적 책임은 신청인에게 있음을 알립니다.
- ⑥ 필증에 대한 확인 및 기타 문의는 기구 사무처(02-2144-4300/4304)로 연락 바랍니다.